

『선청일기(宣廳日記)』를 통해 본 내취의 양상 — 정조·순조대를 중심으로 —

우에무라 유키오(上越教育大學)

1. 머리말

조 선후기 군악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태평소·나각·나발·북·자바라·징 등으로 편성된 취고수(吹鼓手)¹와 피리·대금·해금·장고·북으로 편성된 세악수(細樂手)란 두 개의 악반 조직이 형성되어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중앙군제에서는 오영문(五營門)이 각기 취고수와 세악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왕의 측근에 있던 특수한 무관직인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했던 내취(內吹) 역시 취고수와 세악수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슷한 조직 형태는 지방 관아 및 군사기관에도 설치되었다.

이들 이른바 군악병(軍樂兵)에 대해서는, 일찌기 일본인 음악학자 가네쓰네 기요스케(兼常清佐)에 의한 선구적인 언급이 있었고(兼常 1913: 370-372), 이어서 안확(安廓)이 “천년전의 조선군악”(1930)에서 문헌과 증언에 의거해서 군악 전통에 대한 주의를 이끄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음악사적으로도 군사사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18~19세기 도시사회에서 여향문화의 발달이란 관점에서 그들(특히 세악수)의 예술사적 역할이 재인식되게 이르렀고(임형택 1983, 노동은 1995, 사진실 1997, 강명관 1999, 신경숙 2000, 2001 등), 내취 및 영문 취고수·세악수의 전체상도 차차 밝혀져 왔다(윤명원

¹ 이숙희(2002)는 조선후기 취고수와 취타수를 개념상 구별하면서, 취고수란 악대인 취타수 이외에도 여러 기능을 가진 군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뜻했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그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본고에서는 종전의 용법을 답습하여 취고수를 악대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1994, 정재국 1996, 우에무라 1998, 이숙희 2001, 2002 등).

그러나 그들 기존 연구는 아직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고문헌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엄밀한 방법론에 의거한 회화자료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전자에 관해서는 선전관청이 작성·편찬한 수많은 고문헌들이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내취 연구를 위해서 그것들이 활발이 이용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내취의 동향에 관한 문헌적인 연구의 단서로서 규장각 소장본 『선청일기(宣廳日記)』의 기사 내용의 분석을 시도한다. 다만 본고의 대상은 정조 10년(1786)~순조 10년(1810)의 24년간에 한정되어 있고 모든 내용에 걸친 분석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고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둔다.

2. 선전관청과 내취의 개관

먼저 내취 및 그 감독기관인 선전관청이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전관청은 세조 3년(1458)에 설치된 무반 경관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3품에서 종9품까지 8원을 두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속대전(續大典)』에서는 21원,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25원에까지 증가했다. 당초 문무를 가리지 않고 충원되었지만 그 후 무과 급제자만이 대상이 되었다. 왕의 측근에 있어 시종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관직이라서 무반으로서 요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무예에 재주가 있고 병서·전술에도 정통한 인재가 등용되었다고 한다(장필기 2001: 256). 선전관이 성립된 이후 선전관청이 설치되었지만 그 설치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선전관청의 기본적인 임무는 『대전회통』에 “형명(形名), 계라(啓螺), 시위(侍衛), 전명(傳命), 출납(出納), 부신(符信)”이라고 명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이외에도 적간(摘奸)이나 민정 염찰(民情廉察) 등 다양한 임무를 지녔다(장필기 2001: 257). 선전관은 그 임무에 따라 계라(啓螺)선전관, 승전(承傳)선전관, 표신(標信)선전관, 신전(信箭)선전관 등의 직무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계라선전관이 내취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내취 집단의 앞 또는 뒤에 서서 주의의 시작과 종료를 지시했다.

『경국대전』에는 선전관이 입직(入直)할 때 꼭 취라치(吹螺赤)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전관이 이미 취라치(또는 취각인)를 통솔하는 입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 「宣傳官二人，以形名，直大內近側(吹螺赤二人，亦隨入直)」(『經國大典』兵典，入直)
- (2) 「宣傳官四員，武兼六員，直大內近側(吹螺赤八九人，或十人，入直)」(『續大典』兵典，入直)

이 때 선전관에 따른 취라치는 단지 취각만을 업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비와 단속의 임무를 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임무는 나장(羅將)의 그것과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선전관이 나장을 거느리고 숙직했다는 기사가 『연산군일기』에 나온다.

- (3) 「傳曰，宣傳官加二員直宿，且率羅將二十人，待命」(卷56，燕山君十年[1504]十月庚辰)

내취란 명칭이 문헌에 나타나게 된 것은 영조대 이후의 일이지만 그 연원은 조선 전기의 취라치(吹螺赤)에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조선전기에는 취라치가 내취라치(內吹螺赤; 또는 내취각인)와 외취라치(外吹螺赤; 또는 병조취라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취는 내취라치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후기에도 때로는 내취를 “내취라치”로 불렀기 때문이다.²

내취는 선전관청에 소속함과 동시에 병조 중 일군색(一軍色)에도 소속했다(『육전조례(六典條例)』 권7, 용하, 일군색 조). 내취의 주된 임무는 조회(朝會)에서 왕을 시위하는 일, 행행 때 노부에 수행해서 시위하고 필요에 따라 취타를 연주하는 일, 대열(大閱)이나 호궐(犒饋) 의식과 같은 군사 의례에서 절차에 따라 대취타를 비롯한 악기연주를 하는 일 등이었다. 내취의 활동을 오영문 취고수의 그것과 비교하면 군사적인 기능보다 의례적인 기능이 더 강했다. 내취가 흔히 군복이 아니라 천익(天翼)을 입었다는 점(일반적으로 황색 천익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청색 천익을 입기도 했다), 대각(大角)과 같이 조선후기에는 이미 군사적인 기능을 잃은 악기를 계속 보유하고 조선말기까지 노부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보아도 내취의 의례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² 『원행을묘정리의궐(園幸乙卯整理儀軌)』 권2, 大駕陪慈宮詣顯隆園時節目(整理所兵曹)에는 「駕前形名(內吹螺赤依定例隨駕)」라고 적혀 있다.

내취는 원내취와 검내취로 나뉘어졌다. 검내취는 오영문 취고수·세악수를 겸한 내취임이 확실하지만 원내취의 성격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그런 조직은 다음 기사 [4]에 나타나듯이 조선전기 오위(五衛) 제도하에서 있었던 황내취(黃內吹)·흑내취(黑內吹)의 구분에 기하여 병신(丙申)년, 즉 영조 52년(1776)에 제도화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황내취·흑내취의 용어를 조선전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듯하다. 또 원래 황내취는 한양 출신자, 흑내취는 지방에서 선상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었지만 원내취·검내취의 구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다.

- [4] 「壯勇提調鄭民始啓言，宣傳官廳黃內吹黑內吹，自是古規，黃內吹，卽京案付，黑內吹，卽自外方選上者。近來外方黑內吹之侍令，爲弊不些，代棒番布。丙申年，故將臣張志恒，請依五衛時黑內吹，分給五衛將領之故事，以軍門吹鼓手，各抄一牌，屬之宣傳官廳，黃內吹之稱，改以元內吹，黑內吹之稱，改以兼內吹，仍除各軍門吹鼓手行幸時侍令之弊」(『正祖實錄』 卷30, 正祖十四年[1790]七月甲辰)

내취세악수의 형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관견에 따르면 “내취 세악”이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정조실록』 세마대호궤의(洗馬臺槁饋儀)(권6, 정조 2년[1778] 9월 기축)로 볼 수 있는데,³ 영문 세악수의 형성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그 등장이 너무 늦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우에무라 1993: 476). 다만 내취 세악수 중 용호영 세악수가 10명을 차지했다는 점, 용호영에서 내취로는 취고수가 들어가지 않고 세악수만 들어갔다는 점(『만기요람 군정편(萬機要覽 軍政篇)』 1, 용호영, 군액 조)으로 미루어 용호영 세악수가 내취세악수의 성립에 깊이 관여했음은 확실하다. 영조대에는 용호영 세악수가 사악에 사용되었다는 기록(권112, 영조 45년[1769] 2월 경진; 권123, 영조 50년[1774] 9월 을유)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용호영 세악수를 모체로 해서 내취 세악수가 형성되었는지도 모른다.

내취의 인원수에 관해서는 『육전조례』(권8, 선전관청 조)에 선전관청의 도례(徒隸)로서 원내취 50명, 검내취 44명, 군사 2명이 소속했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19세기말의 문헌인 『내취정례(內吹定例)』(1890년 경, 장서각 소장본 2-513)에는 취고수와 세악수를 합쳐 164명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

³ 『춘관통고(春官通考)』 권76, 軍禮, 親臨槁饋儀(今儀)에는 『정조실록』과 거의 동일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으나 내취세악수의 존재는 명기되지 않았다. 한편 19세기 후반의 편찬으로 추정되는 『호궤의주(槁饋儀注)』(규장각 소장본, 규27229)에는 「鼓樂則以內吹兼用」이란 기술이 있다.

(1875, 장서각 소장본 2-608)에서는 126명이 되는데, 겸내취와 세악겸내취를 합치면 44명이 되어 『육전조례』의 겸내취 인원수와 일치한다(우에무라 1998: 660).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더 많은 내취가 있었던 것 같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내취가 350명이나 있으면서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것이고 입직자가 100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권56, 영조 18년[1742] 11월 기미). 또 정조 14년[1790] 당시 겸내취가 95명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1790] 7월 갑진). 정조대 당시의 내취의 총 인원수에 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감독자 내지 통솔자로서의 계라선선관과 별도로 내취 집단 중에도 패두(牌頭)란 대표자가 있었다. 『내취정례』에는 패두로서 2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 원내취와 겸내취의 최고수였다. 패두는 오영문 최고수 세악수 중에서도 각각 1명씩 선발되었고 일반 최고수 세악수보다 많은 급료를 받았다(『만기요람 군정편』 2). 따라서 내취에서도 패두의 대우는 당연히 일반 내취를 넘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다. 내취의 패두는 특별히 “도패두(都牌頭)”로 표기될 경우가 많은데, 그가 영문 최고수·세악수까지 통솔했는지, 단지 내취 내부의 수석 대표자였는지도 알 수 없다. 또 『내취정례』를 보면 패두와 달리 “대장(隊長)”이란 직위도 존재했다(우에무라 1998: 657). 이 말이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1867)에도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9세기 후반에는 일반적인 직위였던 것 같지만,⁴ 패두와의 차이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선전관청이 1882년에 폐지되어지만 그 업무는 다른 관청에 이관됨으로써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내취도 결국 한일합방 때까지 존속되었다. 이 사실 역시 내취의 성격이 군사적인 기능보다 의례적인 기능에 더 치중되어 있었음을 말해 줄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내취의 명맥은 그 일부가 이왕직아악부에 계승되었지만, 극소수의 세악수 출신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최고수·세악수는 그 업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선청일기』의 체제

서울대학교 구장각 편 『구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 1』 173쪽에 따라 규장각 소

⁴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 京標下軍總數를 보면 금위영 최고수 100명 중 패두 1명, 대장 5명을 두었다고 한다.

장본 『선청일기』(규 13031)의 체제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선청일기』는 정조 10년(1786)부터 고종 30년(1893)에 이르는 선전관청의 업무 일지이며, 모두 110책으로 된다. 선전관청 자체가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이 일기에서도 확인된다. 110책 중 제1책은 전체의 목록으로서 매년의 주요 행사나 보고 내용 및 그 날자를 기재한다. 제2책 이후는 본문에 해당하고 제2-14책이 정조대(1786~1800), 제15-44책이 순조대(1802~1833), 제45-60책이 현종대, 제61-74책이 철종대, 제75-110책이 고종대가 된다. 다만 중간 부분에 결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청의 일지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정조대에서는 1788년 8월~1789년 4월, 1793년 5월~1796년 5월분이 제1책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만 본문이 없어진 부분이다. 순조대에서는 1800년 7월~1801년 12월, 1804년, 1807년, 1816년, 1828년 분이 결질이며 제1책에도 그 해당부분이 빠져 있다.

일기의 기술 양식은 전 부분을 통해서 대략 같다. 즉, 날짜, 날씨, 입직한 선전관의 성명, 왕의 동정과 그것에 관련해서 선전관청이 실행 및 결정한 사항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때로는 선전관청의 업무 내용에 관련된 상소문, 초기(草記) 등이 그대로 기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취의 동향에 관해서는 망라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행사에서 내취의 관여가 당연한 일로 간주되었을 경우 그 기술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한다.

4. 기술 내용의 검토

1) 내취의 인원수, 규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조대 당시의 내취의 규모를 확실히 규정한 기록은 없지만, 『선청일기』 중의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다음 기사 (5)는 동지를 맞이해서 내취 156명에게 내년의 달력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특별한 행사의 출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전관청이 감독했던 모든 내취에 대한 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內吹一百五十六名處, 各中曆一件賜給」(正祖十一年(1787)十一月十四日)

한편 정조 14년 당시 겸내취가 95명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

다음 기사 [6]에 나타난 “내취 63명”이 원내취의 최고수와 세악수를 의미한다고 보면⁵ 합쳐서 158명이 되고, 위 기사 [5]에 나타난 수자와 가깝다.

[6] 「歲首犒饋時…吹打, 龍虎營四十七名, 訓局五十四名, 禁營五十三名, 御營四十三名, 內吹六十三名, 摠戎廳二十七名舉行事」(純祖八年[1808]正月五日)

이런 사실로 미루어 156명이란 수자가 원내취와 겸내취를 합친 내취의 총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원내취 60명, 겸내취 95명, 합계 155명 정도였다고 추정해도 될 것이다.

2) “일패(一牌)” 등의 의미

내취에 의한 시위 및 입직에 관한 기사를 보면 거기에서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 “사패(四牌)”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음 날에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 “내취품 품하일패(內吹粟粟下一牌)” 등으로 쓰여진 기사가 많이 눈에 띈다. 정조 10년(1786)부터 17년(1793) 사이에 그 용례를 보면(분명히 내취세악수를 뜻하는 예를 제외하면) “일패”가 26번, “이패”가 6번, “삼패”가 6번, “사패(四牌)”가 1번, 그리고 “전수(全數)”가 5번 나타난다. 이런 표기는 『선정일기』 말고도 그 시대 문헌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 일패가 최소의 단위가 되었다는 점. 기사 [7]은 장용영(壯勇營) 폐지에 따라 겸내취의 인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취 일패”로는 수레 앞과 뒤에 최고수를 배치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7] 「壯勇營撤罷後, 分屬各營門, 未得還屬, 故以內吹一牌, 未能前後吹打舉行」(純祖三年[1803]八月十八日)

(2) 겸내취의 경우 각기 본거지가 되는 군영마다 일패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8] 「內吹粟 粟下二牌, 禁衛營, 御營廳」(正祖十年[1786]十二月二十日)

⁵ 원문은 “취타”로 기술되어 있으나 호계 의식의 성격상 당연히 세악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최고수와 세악수의 합계 인원수로 보았다.

[9] 「內吹一牌，都監」(正祖十二年[1788]二月二十五日)

[10] 「內吹一牌，御廳」(正祖十二年[1788]三月二十日)

(3) 후술할 바와 같이 내취 세악수에게도 일패란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

이런 특징을 살펴볼 때 “일패”, “이패” 등은 내취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취 중에서 일정한 규모로 구성된 더 작은 조직 단위를 뜻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패” “사패”는 비교적 대규모한 동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삼패”는 왕이 대가노부로서 종묘를 찾아갈 때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추측이 뒷받침될 것으로 본다.⁶

[11] 「大駕 … 詣宗廟，景慕宮，省牲省器，後還宮，內吹稟下三牌」(正祖十一年[1787]十二月十三日)

[12] 「大駕，詣宗廟展拜，後仍詣景慕宮展拜，後還宮 … 內吹三牌」(正祖十二年[1788]七月二十四日)

[13] 「明日，宗廟，景慕宮，省牲省器，動駕時，內吹稟 稟下三牌」(正祖十三年[1789]十二月六日)

다만 다음 [14]에서는 예외적으로 종묘 참배의 동가이면서도 이패로 하도록 지시되었다.

[14] 「宗廟，景慕宮，明日展拜出令，內吹二牌稟下」(正祖十四年[1790]七月二十七日)

이 밖에 시사(試射)에서 삼패, 사패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사패의 실례는 단 한번밖에 없지만 이것이 특별히 큰 규모로 거행되었기 때문인지 기타 이유 때문인지는 미상이다.

[15] 「明日，武臣專經講代試射出令，而處所以春塘臺爲之，內吹稟 稟下三牌」(正祖十三年[1789]五月六日)

[16] 「咲花堂殿座駕前駕後別監試射時 … 內吹三牌侍衛事」(正祖十三年[1789]十月)

⁶ 『춘관통고(春官通考)』 권50, 續儀鹵簿에는 大駕, 法駕, 小駕를 막론하고 「內吹二十三人, 具軍服, 分左右」로 규정되었고, 今儀鹵簿排列之圖에도 내취가 좌우로 나누어져 수레 앞에 배치되도록 나타난다.

十三日)

[17] 「明日, 春塘臺試射殿座時 … 內吹侍衛稟下四牌」(正祖十三年[1789]十月十七日)

이들 “일패” 등의 단위가 어느 정도의 편성 내지 인원수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세악수의 경우 일패가 곧 이른바 삼현육각 편성을 이루는 6명을 뜻한 것이 아닐까 상상되는 한편 최고수의 경우 그런 고정적인 편성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패” 등이 아니라 입직하는 내취로서 행사를 거행하도록 지시되기도 했다. 입직자의 인원수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속대전』에서는 8~10명으로 규정되었다가 『대전통편』에서는 12명, 『대전회통』에서는 다시 9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정조대에는 다음 기사 [18]~[20]에 의하면 9~12명으로 입직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20]은 『선청일기』가 아니지만 역시 선전관이 편찬한 정조대 문헌의 일부이며 여기서 입직자의 악기별 내역을 알 수 있다. [18]은 또 입직이 3일 교대로 실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경국대전』(병전, 입직 조) 이래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18] 「自去二十二日至今月初三日, 入直內吹, 通四番三十六名, 及都牌頭, 書員, 廳首[跟]隨一名, 合三十九名處, 自宣惠廳白米三斗式頒給事, 下教」(正祖二十年[1796]十月十日)

[19] 「明日禁軍試射時, 入直內吹十名舉行」(正祖十四年[1790]八月七日)

[20] 「壯勇衛試射時, … 入直內吹十二名內, 螺角手一雙, [啫嘩囉]手一雙, 鼓手一雙, 號笛一雙, 喇叭手一雙, 鉦手一名, 羅手一名, 定式待令, 可也」(『受教騰錄』 68.10-69.2, 正祖十一年[1787]正月)

4) 내취세악수

『선청일기』에는 세악수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 과거 급제자(특히 무과 급제자)나 회방인(回榜人)에 대한 사악(賜樂), 군병에게 음식을 주는 의식인 호괘(稿饋), 기타 소규모의 잔치에서 내취세악수가 동원되었고, 내취세악수의 주된 역할이 이런 기회에서의 주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7]과 같은 기회에서는 내취세악수와 오영문 세악수가 합주를 하기도 했다. 다만, 노부와 같이 최고수와 세악수가 함께 동원되었을 때 그 사실이 뚜렷하게 표기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세악수의 실제 활동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음은 확실하다.

- [21] 「月城尉宮壽宴時，啓螺宣傳官率龍虎營兼內吹細樂手，以黃衣服色進去」(正祖十三年[1789]五月二十六日)
- [22] 「平壤回榜出身處，給內吹三絃，及司僕馬一匹事」(正祖十五年[1791]正月二十二日)
- [23] 「宣傳官柳命源，亦爲賜第後，內吹一牌定給事，下教」(正祖十六年[1792]二月二十一日)
- [24] 「生進放榜時，武科回榜人金益緒，同爲入侍，而內吹細樂賜給事，下教」(正祖十六年[1792]二月二十八日)
- [25] 「前後南行宣傳官直赴殿試人，李敬熙，韓泳，柳命源，依下教侍令後，自殿試日至唱榜後三日，三人許內吹細樂一牌，都給事，成怡文，賜給細樂一牌，武藝廳及侍令武藝廳直赴人等處，都給事，下教」(正祖十六年[1792]三月十一日)
- [26] 「犒饋時 … 舉床撤床時作樂，六營細樂合并舉行」(純祖九年[1809]正月六日)

다음 기사 [27]은 장악원 악공에 의한 사악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장악원이 선전관청의 직접적인 관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기록을 남긴 이유는, 과거 급제자에 대한 사악을 내취세악수가 담당할 것인지 장악원 악공이 할 것인지에 관해 운용상 기준이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보이는 “장악원 삼현 일패”란 표현은 매우 보기 드문 것인데, 삼현육각 편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편성을 알 수 없다. 또 [28][29]는 그냥 “사악”이라고 할 뿐이라서 내취세악수가 담당했는지는 미상이다.

- [27] 「林必榮，自殿試日至唱榜後三日，掌樂院三絃一牌賜給事」(正祖十六年[1792]三月十二日)
- [28] 「大駕，由貳極門，春塘臺親臨重試會試設行，而徐英輔參榜賜樂」(正祖十年[1786]三月十二日)
- [29] 「親臨春塘臺壯勇營試射時，… 直赴殿試仍爲賜樂，本廳諸員率往到門事，下教」(正祖十四年[1790]十二月二十五日)

다음 기사 [30]은 내취세악수의 결원 2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겸내취에서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했던 사실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세악별감(細樂別監)”이란 특이한 명칭이 나타난다. 별감이란 액정서에 소속되어 임금이나 세자 등의 행차 때는 어가 옆에서 시위하던 관직이다. 따라서 “세악별감”이란 특별한 직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가 기타 문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과 세

악수가 당연히 시위 역할도 지닌 것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필자는 이 말을 내취 세악수 일반에 대한 하나의 호칭으로 보고 싶다.

[30] 「統長口傳下教，內細樂別監二名，有關，代以兼內吹中擇定，管手笛手并侍令，而此後亦用此例，各營兼內吹，必以有根着善手者抄上事，下教，故管手六名，笛手三名，侍令矣，管手鄭貴成，管手曹慶大，選入。」(純祖十年[1810]正月十八日)

정조대 당시 내취에 의한 사악에서도 무동(舞童)이 출사한 일이 있었음이 이미 밝혀졌지만(김종수 2001: 237), 『선정일기』에서는 무동 내지 여기(女妓)에 관한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무동이나 여기들과 세악수의 상호관계를 이 문헌에서 밝힐 수 없다. 이것은 무동이나 여기에 대해 선전관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습각(習角)

습각은 사회(射會)와 더불어 주요한 군사 연습의 하나이며 의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었다. 『육전조례』(권8, 선전관청, 총례)에 의하면 선전관청에서는 1월과 7월에 습각을 실시했고 모두 “상습각(賞習角)”이었다.

그러나 『선정일기』가 습각의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습각의 실시를 명기한 기사가 정조 13년[1789] 7월부터 20년[1796] 7월 사이에 7번 나올 뿐이기 때문이다. 그 기사도 실시의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습각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알 길이 없다.

상습각이라고 명기된 기사는 7월 습각(정조 13년[1789] 7월 16일, 14년[1790] 7월 24일, 20년[1796] 7월 17일)에 한정되어 있다. 봄 습각은 1월이 아니라 2월 내지 3월에 실시될 경우가 많았다. 기록된 7번 중 1번은 상습각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거행된 습각인 “사습각(私習角)”이었다(정조 14년[1790] 12월 26일). [31]에 의하면 사습각이 한 달에 3번 정도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조14년 12월 사습각만이 『선정일기』에 기록된 이유는 미상이다.

습각을 실시하는 장소는 무계동(武溪洞), 창의문외(彰義門外), 영의정동(永義亭洞), 총융청(摠戎廳)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고정되지 않았다.

[31] 「太僕之官調馬，內吹之私習角，每朔俱爲三次」(『受教謄錄』 83.12-84.1, 正祖

十二年(1788)三月十四日)

5. 맺는말

지금까지 『선청일기』의 검토를 통해서 정조-순조대 내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1) 정조대 당시 내취의 인원수는 원내취 60명 정도, 겸내취 95명 정도, 합계 165명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2) 내취는 “일패” “이패” 등의 단위로 다루어졌다. 이것이 일정한 조직 단위임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인원수나 편성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다.

(3) 내취의 입직은 9~12명 정도로 행해졌는데, 이것은 『속대전』 등의 규정을 거의 따른 것이었다.

(4) 내취 세약수는 과거 급제자에 대한 사약, 호궐, 기타 소규모의 잔치에서 동원되었다. 그러나 모동 및 여기(女妓)에 관한 기술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

(5) 습각은 내취가 관여한 군사의례로서 주용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선청일기』의 기술이 매우 소략하고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선청일기』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선전관청의 행정기능을 아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선전관청이 감독한 내취에 대해서도 『선청일기』가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내취 관계 기사는 양적으로도 많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내취의 내부 조직이나 그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청일기』에는 내취였던 인물의 성명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이런 『선청일기』의 성격이야말로 그때 당시의 선전관과 내취의 상호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선전관청은 내취의 감독 기관으로서 동원 명령을 내리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급료나 물품을 관리하는 입장이었지만 더 이상의 관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선전관청이 남긴 기타 문헌에서도 이런 기술 경향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내취 연구에 있어서는 선전관청 문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성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禁衛營事例』 1867. 영인본, 국방군사연구소, 2000.
 『內吹定例』 1890년 경. 장서각 소장본 2-513.
 『大典會通 兵典』 1865 영인 및 역주,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萬機要覽 軍政篇』 1809년, 활자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1.
 『宣廳日記』 1786~1893년, 규장각 소장본, 규13031.
 『受教謄錄(3)』 1776~1880년, 규장각 소장본, 규12982.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년,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六典條例』 1866년, 활자본, 서울: 경문사, 1979.
 『朝鮮王朝實錄』 영인본, 서울: 탐구당, 1972.
 『春官通考』 영인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吹鼓手軍案』 1875년, 장서각 소장본 2-608.
 『槁饋儀注』 19세기 후반, 규장각 소장본, 규27229.

兼常清佐

1913 “朝鮮의音樂” 『日本の音樂』 京都:六合館, 349-421.

강명관

1999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구조』 서울: 서명출판.

김종수

2001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서울: 민속원.

노동은

1995 『한국근대음악사 1』 서울: 한길사.

박홍갑

1995 “선전관의 성립과 음직화” 『조선시대 문음제도 연구』 서울: 탐구당, 264-290.

사진실

1997 『한국연극사연구』 서울: 태학사.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규장각 한국본도서해제 사부 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신경숙

2000 “안민영과 예인들: 기악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267-299.

2001 “안민영 예인집단의 좌상객 연구” 『한국시가연구』 10, 229-256.

안 화

1988(1930) “천년전의 조선군악” 『한국예술총집 음악편 2』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0-

20.

植村 幸生

1993 “조선후기 세악수의 형성과 전개” 『한국음악사학보』 11, 471-495.

1995 “朝鮮前期 軍樂制度の 一考察:吹螺赤と太平簫” 『東京藝術大學音樂學部紀要』 21, 1-32.

1998 “19세기말의 취고수와 세악수: 『內吹定例』 『吹鼓手軍案』의 분석” 『한국음악사학보』 20, 651-674.

윤명원

1994 “대취타의 편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 27, 157-194.

이숙희

2001 “조선후기 오영문의 음악과 그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서울: 국립국악원, 281-330.

2002 “조선후기 취고수와 취타수” 『2002년 춘계 음악 학술대회』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5-48.

임형택

1983 “18세기 예술사의 시각”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168-197.

장필기

2001 “조선후기 선전관 출신가문의 무반 문벌화 과정” 『군사』 42, 253-280.

정재국

1996 『대취타』 서울: 은하출판사.

**A Study of the *Naechwi*(內吹) Based on the
Seoncheongilgi 『宣廳日記』**
— Focusing on the Period of Kings Jeongjo and Sunjo —

Uemura Yukio (Joetsu University of Education)

Translated by Youn Young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sic trait of military band system of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two band system, consisting of *chwigosu* (吹鼓手) and *seaksu* (細樂手). The former group, *chwigosu* consisted of a *taepyeongso* (太平簫), a *nagak* (螺角), a *nabal* (喇跋), a *buk* (북), a *jabara* (자바라), a *jing* (징). The latter *seaksu* consisted of a *piri* (피리), a *daegeum* (大箏), a *haegeum* (奚琴), a *janggo* (杖鼓), and a *buk* (북). In the central military system, each branch of the *oyeongmun* (五營門) had both *chwigosu* and *seaksu*. In addition, the *naechwi* (內吹), which was under the command of the Seonjeon gwancheong (宣傳官廳) — a special military office which was made of King's close staff members — also had its own *chwigosu* and *seaksu*. The similar organization systems were applied to district government offices and military agencies.

Japanese musicologists Kanetsune Kiyosuke (兼常清佐) has discussed (兼常 1913: 370-372) the role of the military musician, and following Kanetsune, Anhwak (安廓) has discussed the military band tradition in his paper “The military music of the Joseon dynasty a thousand years ago” (1930) based on documents and testimony. But overall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about it as an aspect of musical and military history. Since these reports, musicologists have hardly mentioned this music. But recently, with a growing interest in the urban development of 18-19th century middle-class culture, the role of military musicians (particularly *seaksu*) in art history begins to be seen in a new light (Im Hyeongtaek 1983, No Dongeun 1995, Sa Jinsil 1997, Kang Myeongkwan 1999, Shin Kyeongsuk 2000, 2001 etc), and a rough figure of *naechwi* and *yeongmun's chwigosu* and *seaksu* starts to emerge (Yun Myeongwon 1994,

Jeong Jaeguk 1996, Uemura 1998, Lee Sukhee 2001, 2002 etc).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with prior studies taken as a whole. In particular, firstly, there aren't enough investigations of old documents; secondly, there is much to be done in the analysis of paintings based on an accurate methodology. Even though old documents which were written and published by the Seonjeon gwancheong are preserved in Gyujanggak (奎章閣), we cannot say that they are fully utilized in previous studies of the *naechwi*. In this paper, as the start of a documentary study of an aspect of *naechwi* in the later Joseon dynasty, I will try to analyse the parts of the *Seoncheongilgi* 『宣廳日記』 (the diary of the Seonjeon gwancheong) preserved in the Gyujanggak. But the analysis will be limited to the documents regarding the 24 years from King Jeongjo's 10th year (1786) to King Sunjo's 10th year (1810). Because of the limited boundaries of this paper, it will be only a preparatory investigation.

In an investigation of the *Seoncheongilgi*, the following facts were discovered.

(1) In the time of King Jeongjo, there were about 60 *wonnaechwi* (元內吹) and 95 *gyeomnaechwi* (兼內吹). Based on this data, I presume that there were about 165 persons involved in *naechwi*.

(2) *Naechwi* consisted of units named "*ilpae* (一牌)", "*ipae* (二牌)", and so on. I am sure that these were the units of the organization, but the specific numbers of persons and the structure are not clear.

(3) The *naechwi* was managed by 9-12 persons, and this rule was almost followed by the *Sokdaejeon* 『續大典』.

(4) A *nachwi's seaksu* performed at banquets such as the *saak* (賜樂) in honor of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gwageo* (科擧) (the civil service exam), a *hogwae* (犒饋) for soldiers, and small scale banquets. Because of the lack of the records about the *yeogi* (女妓) (courtesans), their participation on these activities is not clear.

(5) Even though the *seupgak* (習角)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itary ceremonies, the *Seoncheongilgi's* records about it are few and obscure.

It is clear that the *Seoncheongilgi* is the most important primary source which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Seonjeon gwancheong during the 18-19th century. Therefore I expected that this record would be the primary fount of the rich information about the *naechwi*. But following examination, there was not enough description related to the *naechwi*, and the record was not

specific enough to describe *naechwi*'s inner organization or changes.

I also want to point out that there is no name mentioned for a *naechwi* officer in the *Seoncheongilgi*. But I think this fac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onjeon gwancheong's officer and the *naechwi*. The Seonjeon gwancheong functioned as a *naechwi*'s supervising office; it was in charge of issuing order to a *naechwi* when it was needed for a ceremony, for counting the number of persons involved, and controlling payment and equipment. But they had no further rights to interfere in *naechwi* affairs. Other documents from the Seonjeon gwancheong express the same limitation. I suggest that in future studies of the *naechwi* we consider both the possibilities and the drawbacks of the documents written by the Seonjeon gwancheong.